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
〔2022. 11. 23.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
전문위원 장석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2 - 109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
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2. 제정이유

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,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기동대 구성, 운영,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라. 사업 운영 관련 재료비, 예산, 서류, 홍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10조)

마.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, 제28조, 제117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고(붙임 2)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 9. 28. ~ 10. 18.) 결과: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3) 규제사전심사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개선 의견 수용(안 제3조에 조손가정 추가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**사회적 취약계층**[1]을 대상으로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

○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이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높은 곳으로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음

※ [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취약계층 현황]

(단위: 가구, 2022년 10월 기준)

계	국민기초생활 보장(주거급여)	차상위계층	한부모가족	차상위계층 중 조손가정	중증장애인	65세이상 독거노인
62,172	22,218	1,668	1,897	23	11,889	24,477

1)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념은 **법정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 등)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노약자 세대, 조손가정, 주거취약 지대에 사는 여성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**으로 쓰임

○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은 법정 취약계층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 세대, 조손가정 등 주거취약 계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주거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○ 본 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대상자,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구성, 임무,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※ [제정안의 구성 및 내용]

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 (목적)	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약자의 주거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제2조 (정의)	생활민원을 “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”으로 정의함
제3조 (대상자)	지원 대상자를 강서구에 주소를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족, 65세이상 독거노인, 조손가정,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함
제4조 (기동대의 구성)	구청장은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및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
제5조 (기동대의 운영)	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을 원칙으로 하고,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름을 명시함
제6조 (기동대의 임무)	가정 내 전기·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, 소규모 집수리, 그밖에 불편사항 등으로 기동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
제7조 (재료비)	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며, 법적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) 및 65세이상 독거노인, 조손가정은 무상으로 처리함을 규정함
제8조 (장비 및 예산확보)	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함
제9조 (서류 등 관리)	기동대는 민원접수처리대장, 장비대장, 자재출납장 등을 갖추어 기록관리를 해야함을 명시함

조 문	규 정 사 항
제10조 (홍보)	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음을 명시함
제11조 (사무 위탁)	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

나. 세부 내용 검토

○ **안 제1조**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○ **안 제2조**는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를 강서구민의 **‘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’**으로 규정함

○ **안 제3조**는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**수급자** 및 **차상위 계층**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1에 의한 **중증장애인**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**한부모 가족**, **65세 이상 독거노인**, **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**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

○ **안 제4조**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 전용 신고창구 및 처리기구인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

○ **안 제5조**는 생활민원의 당일처리 원칙을 규정함

○ **안 제6조**는 기동대가 처리하는 생활민원으로는 **가정 내 전기·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, 소규모 집수리, 그 밖에 불편사항**으로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을 명시함

- 이는 광범위한 수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은 제외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를 소규모 주거불편 사항의 수리·교체 등으로 한정함

○ **안 제7조**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이 원칙이나,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 법적 취약계층 및 65세이상 독거노인, 조손가정은 무상으로 처리하게 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○ **안 제8조**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

○ **안 제9조**는 기동대는 민원접수처리대장, 장비대장,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추고 기록 관리해야 함을 규정함

○ **안 제10조**는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○ **안 제11조**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,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함

- 「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」[2]에 따라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

---

2) 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종합 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

○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처리 사업은 같은 항 제2호 가목 “주민복지에 관한 사업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○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○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사업 시행에 있어 구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먼저, 소규모 주거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, 지원 횟수, 지원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며, 돌봄 SOS사업, 희망 집수리 사업 등 기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과 중복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붙임1 **비용추계서**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의 발생 요인

○ 구민들이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“생활민원 기동대” 운영을 위해 인건비, 재료비, 운영비 등 소요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, 매년 인건비 인상률과 재료비 구매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2023년	2차년도 2024년	3차년도 2025년	4차년도 2026년	합계
세출(구비)	393,367	360,367	368,367	376,367	1,498,468

4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비고
(합계)	393,367	360,367	368,367	376,367	
인 건 비	234,367	234,367	234,367	234,367	
운 영 비	95,000	99,600	105,000	110,100	
재 료 비 등	64,000	26,400	29,000	31,900	

※ 산출 근거

1) 인건비: 운영인력(5명,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, 다급 1명)
2) 운영비: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, 차량유지비 등
3) 재료비: 서비스물품 재료구입비 및 센터 조성비(2023년만 40백만원 반영)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2023년	2차년도 2024년	3차년도 2025년	4차년도 2026년	합계
구비	393,367	360,367	368,367	376,367	1,498,468

6. 작성자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과장 김성태

(담당: 사회7급 이현우 / ☎ 2600-6442)

붙임2 관련 법령

❑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 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   - 차. 주민등록 관리
 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